

수련시설의 운영기준(제9조 관련)

1. 청소년수련활동 운영

- 가. 청소년수련거리별로 추구하려는 구체적인 목적이 명시되어야 한다.
- 나. 청소년수련거리는 청소년지도사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.
- 다. 청소년수련거리의 실시에 있어서는 청소년 개인의 정신적·신체적 능력을 참작하여야 하며, 청소년수련거리에 강제로 참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.
- 라. 수련시설은 법 제35조에 따라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

2. 생활지도

- 가.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3시 이전에 취침하도록 하여야 하며, 취침시간 후에는 취침을 방해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나. 청소년의 남녀혼숙을 금하여야 한다.
- 다.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음주·흡연행위를 금하여야 하며, 성인이라 하더라도 흡연은 정해진 장소에서 하도록 하고, 음주 등으로 인하여 해당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지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라. 음주자 등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.
- 마. 집단급식소 등은 청소년들의 자립정신의 배양을 위하여 자급식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.
- 바. 청소년에게 정신적·신체적 폭행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- 사. 청소년의 탈선을 방지하고 타인으로부터의 위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3. 시설의 관리 및 운영

- 가.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.
- 나. 숙박실별로 해당 숙박실의 숙박정원을 표시하여야 한다.
- 다. 시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·관리하고,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

- 라. 해당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을 초과하여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.
- 마. 수련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당한 경비 외의 부당한 수수료 또는 금품을 제공받거나 수련시설이용자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.
- 바. 해당 수련시설에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시설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법령에서 정한 위생기준, 관리·운영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사.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사단법인 한국유스호스텔연맹이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유스호스텔의 시설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4. 종사자 교육

수련시설의 설치·운영자는 수련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련시설의 운영·안전·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5. 기록의 유지관리 등

다음 각 목의 장부·서류를 비치하고, 기록·유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장부·서류는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유지할 수 있다.

가. 일일 청소년수련활동실시 현황부

나. 청소년수련활동참여자 명단(유스호스텔의 경우는 숙박실 이용자 명단을 포함한다)

다. 청소년지도사 및 직원명부

라. 시설물안전점검 기록대장

마. 현금출납부 및 그 밖의 경리관계 장부·서류

바. 등록관계 서류

사.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실시기록대장